

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·운영 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35호
의결 년월일	2004.12.23 (제116회)

제출년월일 2004. 12. 15.

제출자 행정복지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푸른부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설사무국의 위치가 불합리하여 조정·보완하려는 사항임

□ 주요골자

- 사무국의 위치를 부천시청내에서 부천시 관내로 변경함. (안 제8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·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·운영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중 “부천시청 내에”를 “부천시 관내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사무국) ①(생략) ②사무국은 <u>부천시청내에</u> 설치한다. ③~④(생략)	제8조(사무국) ①(현행과 같음) ②사무국은 <u>부천시 관내에</u> _____. ③~④(현행과 같음)